

■ 全國圖書館大會 主題發表

# 大學圖書館 發展計劃의 再檢討

—특히 4年制 國立大學(校)를 中心으로—

崔 貞 泰  
(서울大 圖書館)

## 1. 檢討의 提起

일찍이 카알라일은 “現代의 진정한 大學은 圖書館이다”라고 喝破한 일이 있다. 그리고 지금 美國의 名門 大學 예일大圖書館의 正門에는 “圖書館은 心臟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한다.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에 대하여 저마다 極讚하는 理由는 圖書館이 大學社會에서 必須 不可缺한 存在일 뿐만 아니라 教育研究支援施設의 重要한 中樞機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心臟이 虛弱하면 다른 모든 機關은 둔해지고 이와 반대로 이 심장이 강하면 다른 모든 기관이 생기를 띠게 된다.

이것은 圖書館이 한 建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運用하는 사람과 利用하는 사람 그리고 藏書와 施設을 包含한 全體가 有機的인 組織體이어서 大學으로 하여금 그 存在를 가지게 하는 生命體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大學圖書館이 社會的 與件으로 보나 行政의 位置로 보아 「附屬圖書館」이라는 이름 밑에 한 大學의 生命體이긴 커녕 末端附屬機關에 지나지 않아 大學本部의 敎務課에 附屬된 機構로서 指導業務를 받고 있는 實情에 있다.

大學의 使命이 곧 教育과 研究를 통하여 國家와 社會에 寄與함에 있다고 할 때 이 使命을 지닌 大學이 滿足스럽게 發展하려면 莫大한 研究施設과 研究를 위한 財政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再言을 요치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大學의 圖書館에는 이 經濟的 뒷받침이 매우 不實하였다. 뿐만 아니라 圖書館을 運營하는 職員에 대하여도 待遇가 나빠서 離職現象이 極甚하며 在職中인 사람도 士氣가 低下되어 効率의인 奉仕에 지장이 많아 勉學雰圍氣造成에 隘路가 적지아니하다. 施設 또한 不充分하여 狹小하고 不便하며 공부방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大學圖書館이 제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있

는데는 상당한 原因이 있다 하겠다. 이 점에 대하여 이미 十數年前부터 全圖書館인이 指摘하고 建議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成就나 反應效果가 別無하였다.

그런데 지난 여름 國務總理의 指示事項으로 文獻情報行政(圖書館)의 改善을 위한 方針이 都下新聞에 發表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忘却되어질번한 圖書館發展計劃이 再檢討되기 始作하였다.

여기서 指示된 事項이 모두 6個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大學圖書館에 該當하는 事項은 이른바 서울大學校圖書館에 先導的 機能을 賦與하여 全國大學圖書館에 대한 情報를 交換하고 資料의 共同活用 등으로 質이 높은 奉仕를 할 수 있게 補強策을 講究토록 促求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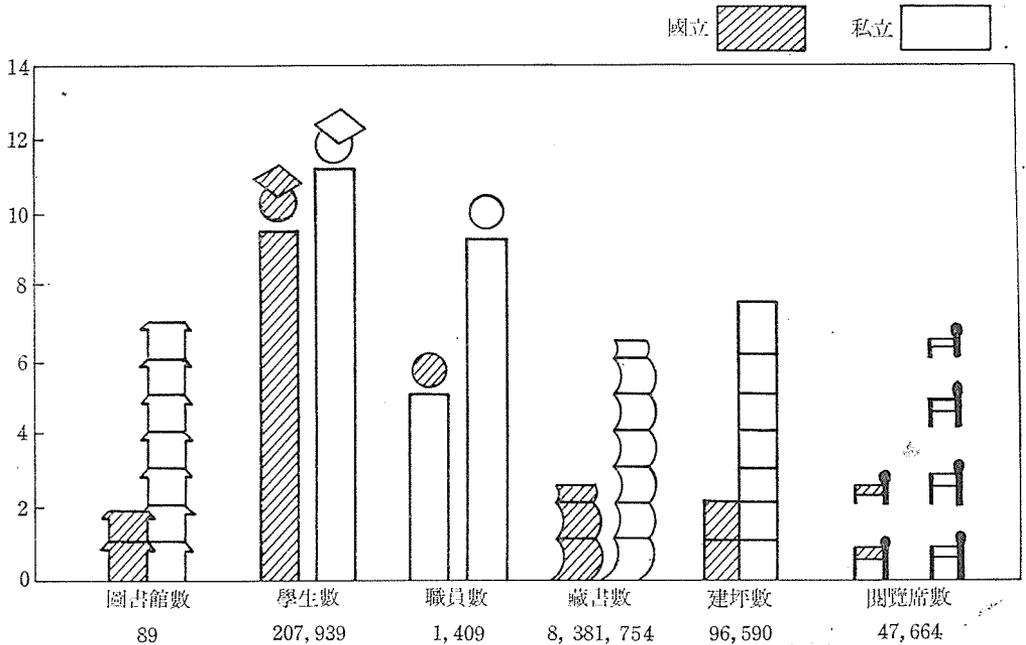
이를 土臺로 하여 本人은 國務總理의 指示事項에서 指摘된 懸案事項을 參考로 하되 多年間 國立大學圖書館에서 奉職하면서 느낀 實務的인 次元에서 도출된 現況과 問題點을 分析하여 改善方案을 提示코자 한다.

즉, 現在 全國의 4年制 19個 國立綜合 및 單科大學이 保有하고 있는 敎授數, 學生數, 學科數, 圖書館職員數, 藏書數, 學術雜誌數, 圖書館建物の 建坪數, 閱覽席數 등을 多角的인 面에서 比較檢討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 國立大學圖書館이 沈滯하지 않을 수 없었던 要因을 찾아 이를 除去 改善發展시키자는 것이다.

대체로 圖書館을 構成하는 데 三要素가 있는 바 職員, 藏書, 施設의 세 가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세 要素가 적절히 構成되어 있어야 훌륭한 圖書館이라 일컬어 지는데 美國의 圖書館學者 히트(Heat)에 의하면, 構成比重的 百分率로 보아 圖書館職員이 70%, 藏書가 25%, 施設이 5%이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를 根據로 한다면 圖書館發展에 圖書館員의 役割이 얼마나 重大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특히 國立大學圖書館

〈圖 1〉

國·私立別 大學圖書館現況



에서의 組織과 人力의 構造面에서 심각한 論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藏書 및 學術雜誌의 確保現況에서 오는 問題點 그리고 施設面에서 圖書館의 建坪과 閱覽席數에 대한 法定基準과 實際面에서 惹起되는 문제점 등을 가지고 檢討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2. 現況과 課題

現在 우리나라의 4年制 國立大學(校)은 모두 19個인데 綜合大學이 8個이고, 單科大學이 11個이다. 地域의 分布를 보면 서울에 2個校, 釜山에 3個校이고 江原, 慶北, 全南, 全北, 忠南道에는 各 2個校, 忠北과 濟州道에 各 1個校씩 設置되어 있다. 平均的으로 보면 각 市·道마다 한 개씩의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이 있어 地域的 按配에는 대체로 均衡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諸般 構成要素로 보아 각 市·道가 심한 隔差를 보인다. 圖書館의 職員數로 보면 서울地域이 175명인데 濟州道는 8명 뿐이다.

藏書量에 있어서는 서울이 1百萬冊이 훨씬 넘는데 江原, 慶南, 忠北, 濟州道는 6萬餘冊에 不過하다. 그리고 閱覽席은 서울이 5千席에 가까우나 釜山, 慶北, 全南, 全北道가 1千席을 確保하였을 뿐이고 그외는 모두가 매우 貧弱한 狀態이다.

한편, 19個의 國立大學(校)圖書館은 全國의 4年制 (初級, 敎育, 專門大學 계외)大學圖書館 89個에 대하여 21%에 해당하며 私立大學圖書館數와는 1對4를 이룬다.

또 國立大學의 學生數는 學部, 大學院生을 合하여 9萬6千명으로 全體大學學生數 20萬8千명에 46%를 차지하고 있다. 圖書館의 職員數로는 480명으로 全體大學圖書館人 1千409명의 34%를 確保하고 있다. 藏書의 保有數에 있어서는 國內 全 大學의 藏書가 838萬冊인데 國立大學은 220萬冊으로 26%에 해당한다. 그리고 圖書館 建物의 延建坪은 2萬2千7百坪으로 全體 9萬6千5百坪에 24%이고, 閱覽席은 國立大學이 1萬3千3百席을 차지하여 全體 4萬7千6百席에 28%를 이루고 있다. 〈圖 1〉

本稿에서는 이상의 全般의 現況을 根據로 하여 職員, 藏書, 施設을 中心으로 그 實態와 問題點을 찾아 보고자 한다.

가. 職 員

圖書館의 職員은 그 業務의 特殊性과 難易度에 있어서 一般職과는 區別되며 특히 文獻에 대하여 技術과 知識을 要하는 專門職으로서 그에 따른 特別한 敎育과 訓練을 쌓아야만 本然의 使命을 다 할 수 있다. 그러기에 國家에서는 일찍이 法으로써 司書의 資格要件을 두어 義務的으로 配置하게 하였으며 美國에서는 이미 百年 전인 1878년부터 大學圖書館의 司書를 敎授職에 接近시키는 表現이 있었으며 1967年 美國州立大學에 대한 한 調査에서는 圖書館員의 3分の 2가 '完全한 敎授身分'을 가지고 있다고 報告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國立大學의 司書가 될려면, 公務員任用令의 適用을 받고 있기 때문에 大學圖書館 學科의 碩士學位를 所持한 자라도 5級 내지 4級으로

甘受할 수 밖에 없다. 현재 全國의 國立大學圖書館員은 480명인데 이 중에서 꼭 切半인 240명이 臨時雜給職 또는 雇員이고 나머지 240명이 定規職일 뿐이다. 이중 거의가 行政職群에서 司書職으로 任用하도록 되어 있어 全國의 司書官(3級乙類)은 단 4명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業務遂行過程에서 專門家の 意見이 充分히 反映되지 못하는 傾向이 많으며 昇進의 機會가 封鎖되고 대우도 不實하여 優秀한 司書職의 離職傾向이 激增하고 있으며 大學圖書館學科 出身의 有能한 人才吸收에도 어려운 實情에 있다.

나. 藏 書

圖書館이 大學의 心臟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잘 整理된 文獻情報資料를 蓄積해서 利用者로 하여금 손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奉仕體制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設置基準令에서는 “圖書는 學生 1명에 대하여 30卷 이상으로 하되 學科當 5千卷 이상과 學術雜誌 5種 이상을 備置토록” 義務化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大學은 이 基準令에 맞추기 위하여 급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기에 達하는 大學은 하나도 없다. 本人의 最近 調査에 의하면 19個大學 平均 藏書數는 11萬5千冊으로 基準令의 53%에 達하였을 뿐이고 學術雜誌는 平均 434種을 確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藏書數를 가장 많이 保有하고 있는 곳은 서울大學校의 1百4萬冊이고 가장 적은 곳은 서울의 韓國體育大學으로 總藏書가 1千冊 뿐이다.

가장 많은 서울大學校를 外國의 著名大學과 比較하면 Harvard大學 954萬冊의 9분의 1이고, Yale大 688萬冊의 7분의 1, 캘리포니아大學 Berkeley캠퍼스 491萬冊의 5분의 1에 不過하며, 이웃 日本 東京大學 459萬冊의 4분의 1에 훨씬 못미치며, 美國에서 順位로 보아 89位인 뉴욕州立大學 Stony Brook캠퍼스의 藏書數와 맞먹는다. 學術雜誌의 確保狀況에 대하여 견주어 보면 더 심한 隔差를 實感케 한다. 서울대의 學術雜誌의 保有數가 購入, 交換, 受贈을 합하여 4千5百餘種인데 美國의 Harvard大와 Berkeley大는 10萬種을 육박하고 있으며 美國의 2流 州立大學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세계가 이와같이 急變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學科當 5種이라는 테두리 속에 基準值에만 얽매어 있어야 할 때가? 가령 학생 5百명을 안고 있는 醫科大學의 醫學科나 法科大學의 法學科에도 學術雜誌 5種으로서 學問의 研究가 계속될 수 있을지 疑問이 提起된다. 여기서 우리는 大學設置基準令의 결함을 發見하고 基準值의 再檢討가 不可避해진다.

다. 施 設

大學圖書館의 機能이 아무리 落後되고 設령 書店보다 못한 圖書館일지라도 蓄積된 藏書를 收藏할 書庫와

教授나 學生이 直接利用할 閱覽席이 必須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도 大學設置基準令에 있어서 “大學圖書館에 ① 閱覽室, 定期刊行物室, 書庫, 事務室을 갖추도록 하고, ② 閱覽室에는 學生定員의 1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座席을 設置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設置規模나 施設物에 대하여는 何等 言及이 되어있지 않았다.

現在 全國立大學의 總藏書數가 220萬冊인데 圖書館의 總建坪數는 2萬2千坪으로 1坪當 100冊을 保有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閱覽席數에 있어서는 全國立大學의 學生 9萬6千名에 대하여 1萬3千席으로 學生 7人當 座席 1개씩 配當되어 全體學生數의 14%를 차지한다. 이 構成比率는 大學設置基準令에 대하여 1%가 未達하는 것이지만 15%라는 基準策定 自體가 絕對不足한 狀況이어서 最近에 와서 國·私立大學이 앞을 다투어 圖書館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現象을 보아도 圖書館 施設의 不足狀態를 實感할 수 있다.

더우기 現在 國立單科大學의 상당수가 獨立된 圖書館建物을 確保하지 못하고, 大學本部로부터 더부살이를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驚愕을 禁할 餘 없는 事實로 나타났다.

3. 發展計劃의 再檢討

前 Harvard大學의 中央圖書館長인 마틴(Louis E. Martin)이 1972년에 서울大學校圖書館을 診斷한 그의 報告書에서 현재의 國立서울大學校圖書館이 한심한 條件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圖書館의 全般的인 組織과 專門司書의 地位 등에 주의 깊은 심사를 要하며 圖書館이 大學의 研究나 授業을 위해 效果的인 奉仕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큰 變化가 있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얼마전 訪韓한바 있는 윌리엄스(Harvard P. Williams)도 비슷한 意見을 陳述하였으며, 1979. 4. 26 行政改革委員會의 「文獻情報行政의 改善을 위한 研究報告書」는 우리에게 深刻한 問題點을 던져 주었고, 우리가 從來까지 생각하던 圖書館觀의 變化를 재촉케 하고, 圖書館發展計劃에 대하여 再檢討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同報告書의 指摘을 重視하고 圖書館發展의 懸案事項을 索出하여 이들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改善方案을 摸索, 이를 위한 法規의 改正 또는 新設을 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改善策을 提示코자 한다.

國立大學圖書館 發展에 대한 改善策

番號	懸案事項	現 況	問 題 點	改 善 方 案	備 考
1	文獻研究職의 新設	學術文獻의 研究機能이 주로 되어 있는 大學圖書館의 司書職이 行政職群에 包含되어 있고 最上位 職級이 3級乙類로 되어 있다.	司書職의 專門性이 認定되지 않고 그 昇進의 길 이 막혀 있어 離職率이 增大되고 士氣가 매우 低下되어 業務의 效率性을 期待할 수 없으며 教授 및 學生에 대한 奉仕가 不實하여 研究 및 勉學 雰圍氣造成에 陰路가 적지 아니하다.	大學圖書館에는 專門職 司書를 確保키 위하여는 最上位職級을 2級乙類로 하는 文獻研究職을 配置하여 특히 專門의 性格을 가진 文獻情報資料의 調査研究에 從事케 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1」개정 「공무원 임용 시행령 20조」개정 「공무원 임용 시행령 별표1, 2, 3」개정 「공무원 임용시행규칙 별표2」개정 「공무원 승진을 위한 평점규정별표 3」개정 「국립학교 설치령 13조」개정 「서울대학교 설치령 17조」개정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2	圖書館의 職制改編	서울대는 4課1室(收書, 整理, 閱覽, 參考書誌課, 奎章閣管理室)로 되어 있고, 地方綜合대는 2課(收書, 閱覽)이며 單科大學은 職制가 없으며 司書職의 定員이 없다.	서울대는 방대한 藏書와 人員에 비추어 各課 및 地方大와의 調整機構가 없으며 地方大는 整理業務가 누락되었고 單科大學은 職制도, 專門職의 配定이 없어 業務의 效率性을 기하기 어렵다.	서울대에 行政室을 신설하여 京鄕 他大學과의 協力體制를 갖추며 地方綜合대는 3課(庶務, 司書, 閱覽課)로 改編하고 單科大學은 職制를 設置후 司書職의 定員을 配定한다.	「서울대학교설치령제17조」개정 「국립학교설치령 제13조」개정 「국립학교설치령 제3장」중 1항신설
3	教育研究職의 確保	大學圖書館의 業務 機能上 調査研究을 위한 專擔要員이 不在하다.	外國學術情報의 調査研究가 不振하며 國學資料의 啓發 등 조사연구의 機能이 極히 微弱하다.	教育研究官 및 教育研究士를 두어 調査研究業務를 專擔케 한다.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4	臨時職 一部의 陽性化	正規職 對 臨時職의 比率이 1對1이다.	責任感이 없고 離職率이 增大하여 專門의 業務의 效率性을 期할 수 없다.	臨時職중에서 적어도 50%를 正規職으로 陽性化한다.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
5	圖書館行政의 自律性 確保	敎務課 事務分掌事項中 圖書館의 管理에 관한 事項이 規定되어 있다.	自律性이 없고 不必要한 節次를 거치게 되므로 非能率의이다.	圖書館이 敎務課 管轄에서 벗어나게 한다.	「서울대학교 설치령제 13조②항」개정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②항」개정
6	雜給職員 規定의 改正	「사서요원」이 5종으로 되어 있다.	報酬가 낮아 士氣가 低下되고 求人이 어렵다.	「사서요원」을 2종에 삼입한다.	「잡급직원 규정 별표 1」개정
7	大學設置 基準令의 改正(圖書 및 學術雜誌)	圖書는 1人當 30卷으로 하되 學科當 5千卷 이상으로, 學術雜誌는 學科當 5種 이상으로 한다.	基準令에 明示된 것으로는 現實에 맞지 않는다.	圖書는 일단 留保하고 學術雜誌는 分野別로 基準을 달리한다.	「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개정
8	“(施設)	圖書館內 閱覽室, 定刊室, 書庫, 事務室을 갖추게 하고, 閱覽室은 學生定員의 15%이상을 수용토록 한다.	大學圖書館의 機能上 4室로 絶對 不足하며 閱覽室의 學生定員 15%는 공부방 구실도 할 수 없다.	學生 및 教授數에 比例한 圖書館의 規模를 策定하고 各室은 機能적으로 增設하며 閱覽席 基準도 上向 調整한다.	「대학설치기준령 제13조」개정
9	圖書館 豫算增額 및 圖書費 項目의 設定	圖書館에 割當되는 豫算이 極小하며 地方 一部 大學에서는 圖書費 項目이 없다.	豫算의 缺乏으로 效率의 인 奉仕가 어렵고 計劃的인 藏書構成에 저장이 있으며 窮極의으로 圖書館 發展에 阻害要因이 된다.	豫算을 大幅 增額 措置하고 豫算編成時 大學全體의 몇%를 割當한다던지 教授, 學生 1人當 配當金額을 算定한다.	「예산 회계법」개정
10	文敎部 職制에 圖書館 專擔部署 設置	文敎部內에 圖書館 行政을 專擔할 機構가 없다.	圖書館 懸案事項이나 建議事項을 審議한 部署가 없고 圖書館 行政에 空白을 가져온다.	文敎部 職制內에 圖書館 局 내지 圖書館課를 新設한다.	「문교부직제 제2조 및 제3조」개정

番號	懸案事項	現況	問題點	改善方案	備考
11	서울대학교 圖書館에 先導的 機能 賦與	國內에서 가장 豊富한 資料를 保有하고 있음에도 制度의 未備로 資料共同 活用이 안되며 行政體制의 微弱으로 水準 높은 奉仕를 못하고 있다.	制度上 機能이 賦與되어 있지 않아 大學圖書館 相互間 書誌情報交換 등 廣域의인 活用이 不可能하다.	先導的 役割을 할 수 있는 專門要員의 確保와 行政室을 新設하여 全國 大學圖書館과의 協調業務를 擔當할 機能을 強化한다.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7조」 개정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12	서울대학교 내에 「文獻情報學 碩士課程」 또는 「文獻情報學研究所」 新設	文獻情報學의 연구 體系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國內의 大學院 課程에서 獨立學科가 없다.	專門職 要員의 確保가 困難하며 文獻情報行政의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大學院 또는 特殊大學院 중 1個 大學院에 碩士課程을 設치하고 아니면 서울대 圖書館內 研究所를 設置하여 常任研究員을 配置한다.	「서울대학교설치령 중 별표1~2」 개정 「서울대학교설치령 제6조 및 제17조」 개정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4. 要約 및 結論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現在 우리나라 國立大學 圖書館은 外形이나 內質에서 상당히 落後되었고 圖書館 固有의 使命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要因은 대체로 組織人力 등 行政體制의 未備로 機能을 發揮할 수 없었고 大學이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稀薄하여 豫算配定이 인색한데 起因하였으며 施設마저 不便하여 教授나 學生 등 利用者로 하여금 圖書館을 不信 내지 疎外하고 있었다는데 焦點을 맞출 수 있다.

晩時之歎의 感이 있으나 이번 國務總理의 特別指示는 우리에게 상당한 鼓舞을 주며 또한 最近에 圖書館法의 改正論議는 活力素를 넣어 주어서 上述한 沮害要因을 除去하는데 바탕이 된다.

따라서 本人은 大學圖書館改善策에서 圖書館法 등 國會에서 審議하여야 할 法律은 일단 除外하고 「令」, 「規定」에 局限, 範圍를 限定하여 改善策을 찾아 본 것이다. 그러면 이상 12個項을 中心으로 現實性에 비추어 다시 한번 要約 結論짓고자 한다.

<첫째> 文獻研究職의 新設: 大學圖書館의 特殊性에 비추어 適正課程의 學問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 Academic Status를 賦與한다.

<둘째> 圖書館의 職制改編: 서울대圖書館에 「行政室」을 新設하며, 地方大學校는 現職制 중 「收書課」를 「司書課」로 改稱하고, 別度로 「庶務課」를 新設하여 一般行政 業務를 擔當케 한다. 그리고 單科大學은 職制를 設置한 후 專門職의 定員을 配定한다.

<셋째> 教育研究職의 確保: 學術文獻의 調查研究를 專擔할 教育研究官과 研究士를 配置하되 資格要件을 두어 반드시 圖書館專門職이어야 하도록 한다.

<넷째> 圖書館 臨時職一部分의 陽性化: 現臨時職 全部를 陽性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現職의 50%程度를 陽性化한다.

<다섯째> 圖書館行政의 自律性 確保: 敎務課의 事務分掌事項 중 「도서관」을 삭제한다.

<여섯째> 雜給職員規定의 改正: 司書要員을 「규정別表 1」 중 「5종」에서 「2종」으로 縮少한다.

<일곱째> 大學設置基準令(圖書 및 學術雜誌)의 改正: 圖書에 대한 基準은 일단 留保하고 學術雜誌에 대해서는 分野別로, 즉 學科當 人文系 20種, 社會系 30種, 自然系 50種 이상으로 大幅 增加한다.

<여덟째> 大學設置基準令(施設)의 改正: 各室을 機能別로 多樣化하여 區分設置하고 面積에 대하여도 最低基準率을 策定하며 閱覽席에 있어서도 學生定員의 30% 이상으로 擴大한다.

<아홉째> 圖書館豫算增額 및 圖書費項目設定: 圖書館豫算을 增額시키고, 教授數·學生數에 比例해서 豫算編成指針을 作成施行하며, 一部 圖書費項目 未設定 大學은 반드시 豫算項目에 삽입한다.

<열째> 文敎部職制에 圖書館專擔部署 設置: 美國이나 日本의 경우처럼 圖書館을 專擔하는 行政部署를 設置하여 下意上達이 有機的으로 傳達되도록 한다.

<열한번째> 서울대학교圖書館에 先導的 機能賦與: 國立大學 뿐만 아니라 私立大學에까지 情報活用을 위한 相互協力體制를 갖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며 이런 役割을 擔當할 組織으로 「行政室」을 新設하고 專門職員을 確保한다.

<마지막> 서울대內에 「文獻情報學碩士課程」 또는 「文獻情報學研究所」의 新設: 時代的 副應에 맞추어 碩士學位課程을 新設하되 서울대의 「國民倫理教育學科」처럼 (學部課程은 없지만 大學院課程을 두었다) 一般大學院에 設置하던지, 特殊大學院인 경우 機能上 行政大學院內에 設置함이 妥當하다. 時期上 學科의 新設이 不可할 경우 圖書館內에 研究所를 두어 常任研究員을 配置하고 一年課程의 高級司書의 養成을 위한 講讀·現場教育을 實施한다.